





2020-6호

06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 의정정보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6 호

06



## Contents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7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 10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4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 23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29 '자유학년제 미디어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 41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현주소' 의정토론회



###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51 서울시의회, 독도방문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 54 인천시의회,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
- 55 충북도의회, 코로나19 피해농가를 위한 농촌일손돕기 실시

### 최근 제 · 개정 법령

-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65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질의
- 68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관련질의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6호

01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시행 2020. 5. 27.] [부산광역시조례 제6143호, 2020. 5. 27.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 기본권”이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관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식생활”이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정책 전반과 결합된 영양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균형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체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민 영양관리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영양관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5.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영양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민영양정책위원회로 본다.

제7조(영양관리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영양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제7조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 2.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2.] [인천광역시조례 제6391호, 2020. 6. 2.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에서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과 경제주체간의 갈등 해소, 경제적·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민주화”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경제”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에서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 등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
4.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6.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계획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전략 및 추진 방안
  8.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추진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제민주화 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업무소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경제민주화 업무와 관련된 실·국장
3.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①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경제민주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경제민주화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검토·건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2.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등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
3.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민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7조(시민제안) 시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등을 발굴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 및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8.] [전라남도조례 제5090호, 2020. 6. 18. 제정]

#### 📌 주요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산업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장비 등의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 인력 양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기술개발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3. 바이오산업 관련 집적화 단지 조성
4.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창업·보육 및 시험·인증
5.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금
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

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제11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장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

제14조(법인의 운영)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5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내에 둔다.

제16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
7. 임원의 인원수·임기 및 그 임면(任免)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
9. 정관의 변경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

12.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 마련
2.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
4. 창업 보육,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 이용 및 개방 실험실 운영
6.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7.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
8. 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화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0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1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21조(재산출연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보조 및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도지사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6호

02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 2020. 6. 11.] [동작구 조례 제1510호, 2020. 6. 11.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특별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제9조의 특별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지원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2.] [성남시 조례 제3508호, 2020. 6. 12.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7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등)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6호

03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자유학년제 미디어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현주소’ 의정토론회



# ‘자유학년제 미디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20. 5. 29.(금), 10:30~12:00 / 계룡문화예술의전당〉



## I 총 평

(김대영 의원)

- 금번 토론회는 교육현장에서 실제 미디어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와 미디어전문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교육현장에서 미디어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연기되었다가 감염 및 확산방지 차원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등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함.
  -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충청남도 자유학년제의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학생들의 미디어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디어프로그램의 역할을 조명한 자리였다.

⇒ 토론회의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부서와 관계기관등과 공유하여  
중등 교육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초·등·고 전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례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II 주요 토론내용

### ① 주제발표 (1인)

#### < 서정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연기, 온라인개학, 재택학습 및 휴대폰 보급의 저연령화, 1인 미디어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이에 ‘꿈으로 채워지는 행복한 배움 충남자유학년제’를 주제로 교장으로 재직시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에서의 경험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실행 에피소드 중심의 발표를 진행함.
- 미디어(Media)란 매체란 뜻으로 신문, 잡지, 우편, 라디오, TV, 핸드폰, 동영상, SNS 등을 말함.
-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뜻함.
-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으로 고도화된 정보화시대, 정보의 홍수속에서 미래인재의 핵심역량인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창의력 등을 키우기 위해 정보를 선택, 가공, 전달하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이 필요함.

## ○ 미디어교육 변화

- 1970년대 사회미디어교육
- 2011년 학교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 2016년 자유학기제의 등장

## ○ 충청남도 자유학년제의 이해

- 중학교 1년동안 학생들이 지식·경쟁중심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습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토록 함.

<그림 1> 교육부, 자유학기제 운영, 시청자미디어재단>

| 구성       | 내용                                                     | 목적·성격         | 학습내용                | 운영방법     |
|----------|--------------------------------------------------------|---------------|---------------------|----------|
| 진로탐색 활동  |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 | 진로 탐색         | 진로·직업 관련 내용         | 학생 희망 선택 |
| 주제선택 활동  |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학생 중심의 교과연계 또는 주제 중심 활동 운영  | 전문 프로그램 학습    |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          |
| 예술·체육 활동 |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                            |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 | 문화 음악, 미술, 체육 관련 내용 |          |
| 동아리 활동   | 학생들의 공동된 관심사를 구성된 자발적, 자율적인 학생 중심활동                    | 자치적, 자율적 활동   |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          |

## ○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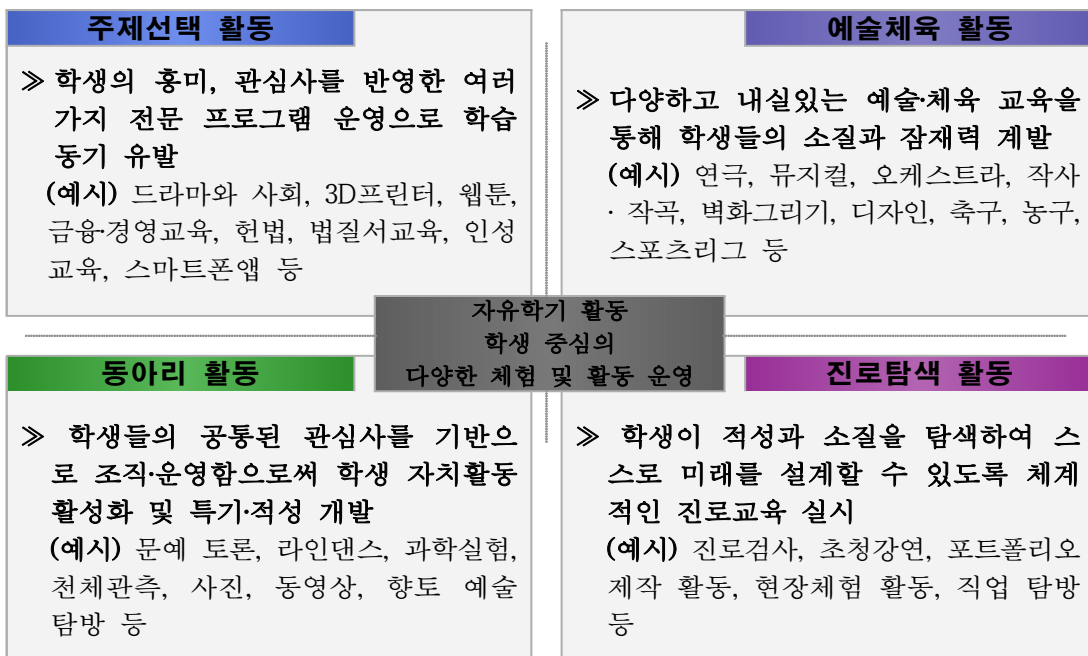
- 미디어와 연관된 성취기준을 근거로 수업 실시
- 국어과, 사회과, 기술과 등에서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나 특징을 이해하고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지고 있음.
- 자율활동의 창의주제활동, 학교신문제작반, 신문읽기반 등 미디어 교육관련 동아리활동, 외부기관과 연계한 자율동아리 활동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짐

-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서의 미디어교육으로는 뮤지컬, 연극, 광고, 드라마, 영화 등이 있음.
- 자유학년제에서 미디어프로그램 운영 현황
  - 중학교 : 계룡중, 공주중, 복수중, 온양중
  - 고등학교 : 덕산고, 공주영명고
- 영명고(공주) : 학교신문 만들기 체험활동
- 복수중(금산) : UCC 영화제 참가
- 계룡 금암중학교
  - 청소년기자단 운영
  - 국회와 청와대 방문 : 국회시설 견학과 국회기자체험활동 및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대변인한테 직접 청와대의 역할과 기능의 설명을 듣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기자 활동을 체험하기도 함.
- 학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능동적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개인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해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 인성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및 개성과 강점의 발견, 그리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학습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충청남도교육청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그리고 범교과 분야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협력 연구기관 교육콘텐츠를 매칭 한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각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자유학년 기간 동안 교육과정, 수업과 연계·심화된 주제선택 및 진로탐색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② 지정토론 (5인)

### ① 정희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 2013년 시범적으로 도입한 자유학기제가 2016년 중학교 전면시행을 거쳐 2019년 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학년제의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자유학년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으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 제공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 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해야함.
- 자유학년제 운영은 오전에는 11개 일반교과수업, 오후에는 4가지 영역의 자유학기활동 수업,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이 이루어짐.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간 융합수업, 주제중심 통합수업, 자기 주도 학습 등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그에 기반한 형성

평가, 수행평가 등 학생의 성장·발달에 중점을 두는 과정 중심의 내실 있는 평가가 진행됨.

- 주로 오후에 진행되는 자유학기 활동은 연간 221시간 이상 편성하며, 학교 여건,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의 네 가지 영역으로 균형 있게 편성·운영함.
- 충남형 자유학년제의 특징은 성공경험 기회 부여, 칭찬 강화, 교사연구회와 연계하여 연구, 상담, 교과 수업에 적용하여 자존감 향상 학기 운영
- 대학생 수업지원단 활용 개별 학생 학력 지원, 농어촌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다양한 체험, 선택권 강화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함.
-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하는 온마을 자유학년제 운영
- 초등-자유학기, 중2 연계학기, 고등-자유학기 운영을 통한 초·중고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로 초·중고 연계를 통한 자유학년제 확산
-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방안
  - 교과, 창체시간에 활용 가능한 수업자료 개발
  -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미디어 선택과목 개설
  -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공간 조성
  - 지원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 교사 맞춤형 연수, 교사중심 현장지원단 양성, 예비교원 단계부터 지원 등 교사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 미디어교육 센터 설립 등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②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 자유학년제는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성적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적성을 찾고 꿈과 진로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제도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디어 이용에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능동적 활용보다는 ‘스마트폰 중독’ 등 부정적 모습들이 더 부각되곤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복합미디어 시대인 현 사회에서 올바른 미래인재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미디어리터러시로 대표되는 미디어프로그램이 필수로 요청될 수밖에 없음.
- 그렇다면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능동적 사회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본 토론에서는 간접적인 참고지표로서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18년 개최했던 ‘학교 뉴스제작경진대회’ 라는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봄.
-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사회의식 효과와 문화적 실천을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사회의식의 차이로 알아봄.
  - 모두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등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
  - 참여집단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높음
  - 참여집단이 긍정적 인식으로 미디어에 대한 신뢰감이 높음
  - 신문, TV, 인터넷에서 나라 안팎의 정치 소식에 관심이 높아짐
  - 일본제품 불매운동, 촛불시위 등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짐
- 정치적 관심에 대한 영향요인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이나 신뢰감 자체보다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정도, 사회 문제에 대한 주변인들과의 대화 및 공유가 정치적 관심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사회적 문제 발생 시 학생들의 정치 참여 의식 의사는 일상적인 의견 표출이나 단순히 뉴스기사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이해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소통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게 나타남.
  - 프로그램 참여자의 뉴스와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다양한 관점 이해와 균형적 분석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비판적 사회인식으로 확장되는 등 사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디어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 미디어에 대한 신뢰감이 상승하였으며, 정치적 관심과 정치 참여 의식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이 뉴스와 사회현상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가공된 뉴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비판적 사회 인식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 조사결과로 미디어프로그램이 자유학년제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데는 구체적 단서를 제공해주리라 판단됨.

### ③ 장영래 (코리아플러스방송 대표이사)

- 학생들의 올바른 미디어프로그램교육은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만18세로 선거권연령이 하향되고 학생들의 정치참여의식이 높아지는 시점에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학생들의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미디어활용 창의력 체험교실 프로그램인 신문 만들기, 자기주도 학습 마인드맵, 청소년기자단 등 미디어교육을 위한 창의체험프로그램 등을 수차례 진행하였음.

- 각종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선택·가공 하는가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됨.
- 미디어를 통해 글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전문가)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때 객관성을 확보해 기사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정 사안을 경험한 사람의 사례, 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장은 가능하면 사실이나 칼럼에서 표현되어야 함.
- 이처럼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자신의 관심분야에 맞게 모듬으로 나누어 신문기사 작성법, 말하기,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학교와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함.

#### ④ (천광로 평생학습지원센터 이사장)

- 미디어(신문, 방송)는 인류 문명 발달의 결과물임
-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성격이라 보는 조보(朝報)는 15세기 조선의 승정원 발표자료를 관청에서 필사하여 배포한 관보형식임.
- 한국언론은 1883년 한성순보, 1894년 조보에 이어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등장함.
- 한국언론의 원조는 충남 서천 출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심.
- 학교신문 만들기는 학생들에게 소통·관계 체험 및 미래능력을 배양함.
- 학생들이 오디오중심 방송반에서 사진, 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가 융합된 디지털 방송반을 운영하여 미래사회인재양성에 부응.
- 영상 인문학 특강 등 학생들에게 유익한 영상을 전달케 함.

### ⑤ (윤재은 계룡시의회 의원)

- 디지털미디어시대를 구성하는 핵심은 텍스트와 이미지(사진), 영상이다. 인터넷과 신문, 영상미디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문에서 인터넷, 이제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마켓 4.0 시대에 걸맞은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으로 새로운 톨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 이 네 가지는 우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중요한 도구다. 앞의 듣기와 읽기가 메시지를 수용하는 주요한 행위라면 뒤의 말하기와 쓰기는 메시지의 전달 행위다. 듣기와 말하기는 구어 커뮤니케이션 행위인 반면, 읽기와 쓰기는 문어 커뮤니케이션임.
- 디지털미디어시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관습은 따로 있는가라는 문제를 미디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치·행정, 경제·산업, 교육·과학, 사회·문화로 분류하는 것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분류로 제시한다. 하나의 사실을 4가지 관점에서 검토하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임.
- ICT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제품 중심(마켓 1.0)에서 고객 중심(마켓 2.0)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 중심(마켓 3.0)으로 전환돼가는 시장의 변화를 통찰해왔고, 『마켓 4.0』을 통해 필립 코틀러는 그간 광범위하게 변화한 디지털 경제의 지형과 특성을 한 번에 정리함.
-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를 기초로 정치·행정, 경제·산업, 교육·과학, 사회·문화의 분류로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으로 표현하는 미디어는 개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터넷과 신문, 인터넷방송은 유용한 미디어로 자리 메김 할 것임.

### ③ 자유토론 (질의답변)

- 온라인 중계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략하기로 함.

### III 토론회 결과

#### <도출과제>

1. 충청남도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이 일정기간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적성을 찾고 꿈과 진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제도이다.
2. 인터넷과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현 사회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미래인재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습득능력은 물론 미디어리터러시로 대표되는 가공·표현 및 전달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연기, 온라인개학, 재택학습 및 휴대폰 보급의 저연령화, 1인 미디어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올바른 미디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4. 이에 미디어프로그램 교육여건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과목개설, 교육공간 조성, 교사의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 <성 과>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중계 방식 의정토론회 개최 발판 마련
- 충남형 자유학년제의 현황 및 실태 파악
- 학부형 및 교육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미디어교육 필요성의 환기
- 초·등·고 전과정 연계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

##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교육혁신과)
  - 도의회 교육위원회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현주소’ 의정토론회

〈20. 6. 8.(월), 15:00~17:00 / 충남도의회 112호〉



### I

## 총 평

(안장현 의원)

- ❖ 금번 토론회는 충남의 청년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충남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청년 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충남의 청년, 충청남도, 도의회가 청년정책 관련 중간지원조직(예:청년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흐름 및 타 시도의 사례를 공유하여 충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충남의 청년정책을 발굴하는데 조례의 개정과 함께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함.
  - 앞으로,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 및 중간지원 조직 설립 등 충청남도 청년정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 II 주요 토론내용

### 1 주제발표(1인)

#### ○ 권지웅 (前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 한국에서 청년정책을 처음으로 정의한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인데 2015년 1월에 제정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가 그 시초이며, 「청년 기본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제 청년문제는 단순한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 ‘기후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 ‘ 등 세대를 관통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와 모두 맞물려 있어 일자리 정책에 한정짓지 말고 다양한 시각에서 청년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청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청년주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과 미래 반영적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편성 역량, 전달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차이를 고려하여 각 기관은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역할을 달리하여야 함.
- 이 외에도 청년정책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센터 같은 참여기구를 법제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충남의 청년정책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참여기구의 실질적 운영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② 지정토론(5인)

### ① 강석주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중앙정부는 청년소통정책관,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는 올 1월에 전담부서(청년정책과)를 설치하고 청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청남도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타지역 인구 유출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부족, 타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영유아 및 아동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2020년 충남 청년정책 주요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설명.
  -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충남 청년정책추진본부의 내실운영과 정책 컨트롤타워 수행기능 강화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전부개정 추진 예정
  - 청년의 도정참여를 위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선정 및 청년 위원 위촉률을 정비하고 참여기구인 충남청년 네트워크를 보완하여 2기 구성 예정
  - 청년의 수요에 맞춘 청년체감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멘토단 운영, 경제 취약계층인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주거안전망 구축지원, 주거, 교육, 소통공간 조성 등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예정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 ( ‘20년 71개사업, 386억원, 1,690명 일자리 창출) 및 지역대학과의 취업지원 체계구축 등 추진예정

## ②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남의 청년정책은 생애주기별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으며,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결혼 등 가족 등을 포함하는 정책범위를 가지고 있음.
- 청년정책은 청년니즈와 충남 현실을 기초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 질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이에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해 볼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 필요함.
- 현재 충남에 있는 청년이 아닌 장래에 충남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청년과 그 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충남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행정부와 소통하려면 청년네트워크와 같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③ 지민규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

- 타시도에 비해 청년정책에 대하여 충남은 늦은 편으로, ‘청년 기본 조례’가 신설되긴 했으나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네트워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활동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에 청년 참여기구가 명시되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함
- 청년에 대한 나이규정이 충남은 만 18세에서 34세로 규정되고 있는데, 서울 청년청, 대전, 대구처럼 선배 활동가 그룹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청년중간지원조직을 설립시 위탁보다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강원도, 경기도처럼 청년특보제도가 충청남도에도 구성되고, 도의회 청년특별위원회라든지 정기적인 청년연구모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충남 청년 온라인 플랫폼이 제대로 구성되어 충남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길 바람.

#### ④ 김광민 (전라남도 청년협의체 부대표)

- 전남지역은 조례에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의 1/2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곳으로 무엇보다도 청년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청년정책에 청년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기초자치단체에 먼저 청년센터가 설치되어야 함.
- 충남의 청년기본조례 개정시 청년센터가 반드시 규정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청년정책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그 많은 청년정책을 다루기에는 행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청년정책 시행전에 테스트베드를 통한 의견반영이 잘 되어 불필요한 정책시행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참여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 ⑤ 고현진 (청년협동조합 「그려」 이사)

-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을 느끼고, 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조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후 17,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나, 현실은 신규설립 수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등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협동조합에 대한 낮은 인식, 주식회사 중심의 경제활동과 사회적기업 위주의 제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 그리고 청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바뀌시길 바람.

### [3] 패널토론

-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적 업무를 보시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서 피드백도 하고, 정책발굴도 해야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이 확보가 되었는지 궁금함.

[질문 : 김광민 전남 청년협의회 부대표]

- 현재 청년정책과 현원이 11명인데,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빠른 시일내에 중간지원조직이 생기길 바라고 있으며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기존의 타부서에서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제약을 받기도 하였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오늘 논의한 조례개정 및 지원센터 설립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 강석주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박춘섭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동의하고, 이 모든 논의가 특정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행정부와 현격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 논의가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행정부와 시(도)민의 언어를 바꿔서 얘기해 줄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 또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의 참여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운영할 사업자를 뽑게 될텐데, 이런 내용을 근거리에서 보는

충남청년네트워크 같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참여요건을 반영하는게 필요해 보임.

[의견 : 권지웅 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 충남 청년 조례에 “충남청년네트워크” 근거 규정을 넣는 것은 6~7월 중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할 것이며, 센터문제는 “청년 기본법” 시행이 되면, 행정부에서 청년네트워크 의견을 받아 9월 회기에 전부개정으로 진행을 할 것임.
- 또한 말씀해주신 청년특별보좌관제도는 우리 정책보좌관께서 잘 듣고 가셔서 결정할 것이고, 도의회 청년특별위원회 또는 청년정책연구모임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할 것임.
- 플랫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었으므로 실제 활용이 잘 되도록 많은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 안장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 ※청중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질문자가 없음>

#### ④ 마무리 말씀

-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오늘을 시작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살고싶은 충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함.

[마무리 발언 : 지민규/ 충남청년네트워크]

- 앞으로 이런 논의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심의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함을 과장님께서도 공감 하셨을 테고,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한 절실함은 도민들이 판단할 몫이라 생각함.

-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인하도록 할 것임.

[마무리발언 : 안장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 III 토론회 결과

#### <도출과제>

- 실제 충남의 청년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정책결정기구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
- 행정부와 도민(청년)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시급히 필요.
- 도지사직속 청년특별보좌관제, 청년정책연구모임 등 논의를 이어나갈 제도적 기구 필요

#### <결 과>

- 정책결정에 현실적인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조례에 ‘청년네트워크’ 근거·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
- 행정부와 청년(도민)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하여 조례개정과 예산반영을 제안.
- 수시로 청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하여 청년특별보좌관제, 청년정책연구모임 등 제도적 기반마련 제안.

###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충남도 청년정책과)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6호

04



##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독도방문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인천시의회,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

충북도의회, 코로나19 피해농가를 위한 농촌일손돕기 실시



## 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독도방문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 독도서 독도수호 결의대회 개최, 독도수호 의지 다져 -
- 독도경비대 노고 격려하고 위문품 전달 -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2일 독도를 방문, 일  
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 규탄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  
법적·실효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천명하며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날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구성된 독도수호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울릉군청  
방문, 울릉·독도 해양연구기지 견학, 울릉·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및 독도탐방, 세미나 개최, 독도박물관 견학 등 6.1.부터 6.3.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독도수호 결의대회에는 홍성룡 위원장과 김화숙, 한기영 부위원  
장을 비롯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박순규, 양민규, 이광호, 황  
인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첫째 날인 1일에는 울릉군청을 방문, 김병수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와  
울릉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울릉군 경  
제의 어려움을 들은 독도수호특위 위원들은 서울시와 울릉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에서는 김윤배 대장으로부터 독도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김윤배 대장은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 조례 제정, 소위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등 그 동안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의 활동과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 라면서, 앞으로 독도 해양주권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전했다.

이날 특강은 질의·문답이 장시간 이어지는 등 예정된 시간을 넘겨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둘째 날인 2일에는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과 독도 탐방, 울릉경비대 위문 방문이 진행됐다. 독도 탐방 직후, 홍성룡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고종황제께서 독도칙령을 반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에 독도를 방문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라면서, “독도 영토의 중요성과 의미, 소중함을 현장체험을 통해 피부로 느끼고자 이번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마련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보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독도에 직접 발을 딛고 독도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교육청·서울시 독도 교육 조례를 독도수호특위 공동발의로 제정한 바 있다” 라며, “조례시행과 더불어 현재 계획 중인 독도전시관 운영이 활성화되면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정태 위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의회,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독도경비대 및 울릉경비대 위문방문에는 라면, 과자, 피자, 치킨, 티셔츠 등이 위문품으로 전달됐다.

셋째 날인 3일에는 ‘독도의 진실과 극일, 독도 수호를 위한 실천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모든 위원들이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우리영토인 근거 ▲ 독도수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 중 하나를 택일하여 각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 동안 독도수호 특위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울릉·독도경비대 위문방문 등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한 후 현지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시의회,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

인천시의회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 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세심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후속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 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코로나19 피해농가를 위한 농촌일손돕기 실시

- 장선배 의장과 도의원,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농가 작업 참여 -

충북도의회가 29일 진천군 백곡면 일대에서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위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장선배 의장과 임영은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은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김성중 농가 등 3개 농가를 방문해 블루베리·아로니아 발 잡초제거와 고추 순 따기 등의 작업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사송리 이장 김성중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작업 인력이 부족해 큰 걱정을 했는데, 충북도의회에서 찾아와 일손을 덜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장선배 의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일손부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도내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도의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6호

05



## 최근 제 · 개정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5.] [시행령 제30743호, 2020. 6. 2., 일부개정]

## ■ 개정이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려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2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 및 법률 제17067호, 2020. 3. 4. 공포, 6. 5., 9. 5. 시행)됨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 (제19조의8 신설)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할 의도가 없는 경우로서 감염병환자 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등의 경우를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로 정하여 해당 병원체의 보유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제23조 및 별표 2)

-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도록 하며,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다.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확대(제32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에 관한 업무 등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확대(제32조의3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를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별표 3)

-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4.] [시행령 제30735호, 2020. 6. 2., 제정]

###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690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 신청 방법,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대상,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 대상(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단체 등을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양성계획, 교육과정의 편성, 강사 등 교수진 현황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대상(제10조)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에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황, 수출 및 수입 현황,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실태,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라.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등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애니메이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6호

06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질의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관련질의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이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약국 영업을 하는 것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포함되는지(「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등 관련)

[의견20-0118, 2020. 6. 3., 경기도 화성시]

### 【질의요지】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이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약국 영업(약국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것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포함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각주: 법제처 2018. 11. 9. 의견제시 18-0206 참조),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35조제6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각주: ‘영리행위’란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례로 정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업무범위로 볼 수 있음(2020년 1월,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31쪽 참조))를 금지하되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화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화성시의회 윤리조례”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의원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교육복지위원회 직무에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목)을 명시하고 있고,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에서는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을 보건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8조에서는 ‘약사에 관한 사항’을 보건행정과장의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제6항은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각주: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참조(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가 있어 「지방자치법」일부개정(2009. 4. 1.) 시 신설되었고, 화성시의회 윤리조례 제9조제1항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화성시의회 의원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각주: 「화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심사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2009.8.31.) 참조(경기도화성시조례 제622호, 2009. 9. 15., 전부개정)) 신설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나 지도·감독 업무에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하여 그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자격과 면허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이고(제3조, 제6조 등), 약국의 개설 관련 사항(제20조, 제22조 등)

및 약국 개설자의 관리&#8228;감독에 관한 사항(제69조의4 등)이 시장의 소관 사항인 점과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점(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각주: 약사법 제20조제1항은 2002. 9. 19. 헌법 불합치 결정(2000헌바84) 되었으나,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되었음) 등을 고려하면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약사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약사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는 약국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사 자격을 가진 자가 약국 영업을 하는 것은 보건소의 사무에 속하는 분야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고, 보건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의 소관에 속하게 되므로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이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약국 영업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6항 및 화성시의회 윤리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의견20-0117, 2020. 6. 9., 경기도 용인시]

### 【질의요지】

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용인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용인시조례”라 함)에 따르면, 용인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인바, 같은 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2항),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항), 같은 법의 다른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5조),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25조제2항제1호) 그 외 출연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바, 용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용인문화재단은 조례 및 정관과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용인시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 제4조제2호에서는 용인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영(運營)”이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영하고 경영함” 또는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을 의미하고, “관리(管理)”란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등을 의미합니다. (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또한 용인시조례 제4조제2호는 용인시조례가 2016년 5월 27일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574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 용인시 소속이었던 용인시립예술단을 전문예술법인인 용인문화재단 소속으로 변경하고 용인문화재단에서 용인시립예술단 운영규정을 정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각주: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2016. 5.) 및 같은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이유,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2016. 5.) 및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경기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2015. 5. 10.) 각 참조 ) 이에 따라 「용인문화재단 정관」에서도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를 용인문화재단의 사업 중의 하나로 규정하면서(제4조제2호), 같은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0조), 그 위임에 따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3조에서는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용인시조례 제4조제2호는 용인문화재단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그 소속인 용인시립예술단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권한에는 용인문화재단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는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 표지 설명

### 충남도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3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대 의회 반환점을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고견을 듣고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유병국 의장을 비롯해 이종수(5대, 6대 전반기)·김재봉(6대 후반기)·이복구(7대 전반기)·박동윤(7대 후반기)·정순평(8대 후반기)·유병기(9대 전반기)·김기영(10대 전반기)·윤석우(10대 후반기)·유익환(10대 후반기) 역대 의장이 참석했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와 정책연구원제 도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 정책위원회 출범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역대 의장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달성, 충남 혁신 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 등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직간접적 성과를 축하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장은 “선배 의장들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 현재 충남의 위상을 세운 우리 도의회 역사의 산증인”이라며 “현재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안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 2020. 6. 3. 보도자료 -

## MEMO

#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6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